

충청북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94
----------	-----

제출연월일 : 2005년 월 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이유

한국가스공사가 충북권 천연가스(LNG) 공급을 위해 도시가스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 경감(안 제30조제1항)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안 제30조제2항)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충청북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세감면조례”를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로 한다.

제28조의2를 제29조로 하고,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도시가스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①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가스도매사업자가 도시가스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사업허가를 받기전 6월 이내에 취득한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9조 내지 제34조를 각각 제31조 내지 제36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8조의2(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에 대한 감면)</p> <p>〈생 략〉</p>	<p>제29조(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에 대한 감면)</p> <p>〈현행과 같음〉</p>
<p>〈신 설〉</p>	<p>제30조(도시가스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p> <p>①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가스도매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사업허가를 받기전 6월 이내에 취득한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p> <p>②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사무처리의 위임) 〈생 략〉	제31조(사무처리의 위임) 〈현행과 같음〉
제30조(감면신청 등) 〈생 략〉	제32조(감면신청 등) 〈현행과 같음〉
제31조(감면자료의 제출) 〈생 략〉	제33조(감면자료의 제출) 〈현행과 같음〉
제32조(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생 략〉	제34조(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현행과 같음〉
제33조(중복감면의 배제) 〈생 략〉	제35조(중복감면의 배제) 〈현행과 같음〉
제34조(시행규칙) 〈생 략〉	제36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취

□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세법

제7조(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①지방자치단체는 공익 등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도시가스사업”이라 함은 수요자에게 연료용가스(이하 “가스”라 한다)를 공급하는 사업(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정제업을 제외한다) 으로서 가스도매사업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을 말한다.
- 2.“도시가스사업자”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가스도매사업자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자를 말한다.

3.“도시도매사업”이라 함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외의 자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대량수요자에게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4.“일반도시가스사업”이라 함은 가스를 제조하거나 가스도매사업자로 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아 일반의 수요에 따라 배관으로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허가) ①가스도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일반도시가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1. 도시가스사업이 공공의 이익 및 일반수요에 적합한 경제규모가 될 수 있을 것
2. 도시가스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원 및 기술적 능력 이 있을 것.
3.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적합한 공급시설을 설치·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⑤시·도지사는 제3항 및 제4항의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의 범위안에서 지역 특성에 적합하도록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도시가스공급권역(이하“공급권역”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⑥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7일이내에 그 허가사항을 관할소방서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